

## 건설업 인사노무 관리 실무 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교재로 사용된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연재하고 있다. [편집자주]

### - 본지 연재 계획 -

1. 2013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①②
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실무 ①②③**
3. 4대 보험 정산 대응
4. 일용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실무
5. 노동부 지원금 제도



##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실무③

### 4.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정산

#### 가. 건설업의 적용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 ◆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일괄적용을 함으로써 공사 건별로 성립·소멸·보험료신고 등의 각종 신고 의무를 면제.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미가입재해 발생의 감소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 나. 건설업의 일괄적용

- ◆ 건설업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전문) 건설업자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
- ◆ 건설업자가 최초 원수급공사 또는 하수급 승인공사 착공시 해당 공사 착공일부터 당연일괄적용

### 나. 건설업의 보험가입자

####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 원수급인
-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있는 경우 당해 하수급인
- 한편,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

※ 사례

- 건설현장의 준공청소 시 보험가입자 => 원수급인

- 건설현장의 빌트인 주방가전제품 등 설치시 보험가입자 => 원수급인

### 다. 건설업의 보험가입자

- ◆ 공동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
  - 공동시공방식 : 지분별 각각 보험가입자 원칙. 단, 참여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합의한 경우 대표사
  - 분담시공방식 : 공동수급업체 각 사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공동수급업체 각 사, 단 합의시 주계약자
- ◆ 발주자 겸 시공자
  -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 발주자
  - 발주자가 발주 당초부터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 경우에는 도급분에 대하여는 그 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 라. 하자보수공사

- ◆ 보험가입자
  - 발주자에게 본 공사의 완성물을 인도한 원수급인
  - 원수급인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별도 계약시는 제3자
- ◆ 보험성립일
  - 최초 본 공사의 착공일 (별도의 성립 또는 사업개시 불필요)
  - 발주자가 제3자와 계약시는 해당 하자보수공사 착공일
- ◆ 사업개시 신고(성립 신고) 등
  -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원수급인 도산 등으로 제3자가 보험가입자일 경우는 신고 필요

- ◆ 보험료 산정(하자보수 이행기간 외에 발생한 하자보수 보험료)
  - 본 공사의 확정보험료 정산시 보험료를 산정
  - 하자보수 담당 건설회사가 보험료 납부

### 마.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의 의의
  - 수차의 도급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나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 원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 따라서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 수차의 도급사업이 건설업이고
  -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업자(건설, 주택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자)이며,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절차
  - 신청권자 : 원수급인
  - 신청절차 :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 신청기관 :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하수급인 사업주 불승인요건
  -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하도급공사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

련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 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과 하수급인 내역 신고의 차이점

구분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	하수급인 내역신고
보험료 납부의무	하수급인	원수급인
근로내역확인 신고서제출	하수급인	하수급인
신고(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보험료 납부 방법
  - 원도급사 납부
    - 원수급인이 현장개설신고 및 근로자 부담 분 일괄 납부하고 원수급인 적용 받는 사업주로 인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항
  - 하도급사 납부
    -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으로 보험료징수법 적용 받는 사업주 인정되어 고용보험료 납부함 ※ 고용보험법 제15조 2항의 1호, 보험료징수법 제 9조1항
-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보험료 납부시 문제점
  - 원도급사는 총 공사비 중 노무비율 해당 금액을 일괄 납부
    - ※ 하도급사의 실제 인건비가 계약금액 보다 적더라도 계약금액 공제
  - 하도급사는 기성신청금의 고용보험금을 공제한 기성을 받아 납부

- ※ 일반현장의 고용보험 적용은 부적절하게 사업비(직접공사비)내에서 대부분 정산
- ※ 관급공사 및 SOC시설공사는 고용보험료 정상적으로 내려주어 하도급사에 반영
- 하도급계약서 조항에 고용보험항목을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 금액 내에서 정산 가능하나 계약 당시 금액초과 발생시 정산 받지 못하는 실정임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대책

- 고용보험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요율)인상. 실제 금액 반영
- 고용보험 징수법 제9조 1항 원도급사 납부 의무화
- 고용보험료는 원도급사 납부의무 지도록 규정 강화
- 보험료 대납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제도 폐지
- 공사 계약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계약 거부

**바. 건설업 본사와 현장사무소의 적용**

- ◆ 건설회사 본사
  - 건설공사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
- ◆ 건설현장 사무소
  - 고용보험 : 건설현장 파견 본사 소속 근로자는 본사로 적용(단, 하수급인 본사 소속 상용근로자의 납부주체는 원수급인임)
  - 산재보험 : 건설현장으로 흡수 적용

**사. 사업개시 신고**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이 원도급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을 관할하는 지사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야 함

◆ 사업개시 신고의 중요성

- 재해자의 신속한 보상(사업개시 미신고시 보상처리 지연)
-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신고를 위한 전제 조건
- 발주자에게 기성금액 청구 및 각종 증빙을 위한 요건

**아. 사업개시 변경신고**

당초 사업개시 신고내역(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동 변경내용을 '변경사항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 사업개시 변경신고의 중요성

-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에 대하여 변경사항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당초 신고한 공사기간이 도과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사업종료처리를 하므로 이후 고용센터에서 근로내역확인서의 처리가 지연되며, 공사대금 청구시 가입증명원 및 납입증명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음

**자.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신고**

- ◆ 일용근로자의 정의 : 1개월 미만 고용된 자
  - 단, 건설현장 근로자는 숙련 건설근로자 포함 일용근로자 간주
- ◆ 일용근로자 신고방법
  - 신고방법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신고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제출기관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 안내

자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공사현장은 공사금액 기준)

구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 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 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 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 미만)
1년 이상	11년 1월	11년 1월	11년 1월	11년 1월	11년 1월
6월 이상 ~ 1년 미만	11년 1월	11년 1월	11년 7월	12년 1월	12년 7월
3월 이상 ~ 6월 미만	11년 1월	11년 1월	12년 1월	12년 7월	14년 1월
1월 이상 ~ 3월 미만	11년 7월	12년 1월	12년 7월	12년 7월	14년 7월

※ 2013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카. 고용보험 과태료부과 (미신고 및 허위 신고시)

위반행위	판단기준	금액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미신고, 거짓신고)를 한 경우 -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미신고, 거짓신고)가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최초 미신고한 경우(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자연신고한 경우(시정지시에 따른 자연신고 포함)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산출 방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고
본사	사무(내근)직원, 임금총액	사무(내근)직원, 현장정규직원	대표자 임금제외
건설일괄	현장정규직원, 현장일용직인건비, 외주공사비*32%	현장일용직인건비, 외주공사비*32%	원도급 및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받은 현장

### ◆ 보험료 산출 근거 자료

- 제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현장별원가명세서, 임금대장)
- 원도급 및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현장의 인건비(잡급, 임금), 외주비, 원재료비
-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의 보수가 손익계산서로 계정처리 되었더라도, 산재보험은 건설일괄로 보수를 산입
- ※ 인력소개소 등을 통한 현장인력의 비용이 지급수수로 등으로 계정처리 되었더라도 동 금액을 보수에 산입

## 파. 확정보수총액 산정시 유의사항

- ◆ 공동도급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각 참여사 지분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공동수급사 전체가 합의하여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한 경우에는 대표사가 일괄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함

### ◆ 하수급인 소속 본사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 하수급 공사현장의 하수급인 본사소속 상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주체는 원수급인임. 따라서, 하수급인은 본사 고용보험 임금총액 산정시 하수급현장에 파견된 상용근로자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